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8.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4일, 박홍배의원 등 14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6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6.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
체토론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6.28.) 상정,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4.7.11.)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7.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배의원)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제66조제1호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 사용 추세¹⁾를 고려하여 사용된 폐

1)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 : 2014년 643만톤 → 2023년 841만톤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 2014년 13.7% → 2023년 16.5%

기물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멘트 제조사에 대하여 사용된 폐기물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및 안 제66조제1호의4 신설).

먼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용된 폐기물 종류 및 구성성분 등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임근거²⁾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정보 공개 미준수 또는 거짓 공개 시 벌칙규정 신설의 경우에도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의 중금속 성분이 환경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사 입법례³⁾에서도 관련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멘트 업종에 한하여 정보공개의무 및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기사업법」 제103조제2의2호에서도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시멘트 제조시 폐기물 사용량이 2023년 기준 16.5%에 달하고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정안⁴⁾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4)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203호, 2022.4.12.)」을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3.11.23.)에서 수정의결함.

* 개정안 중 시멘트 제품 등급제 도입은 보류, 정보공개 의무화 및 관련 벌칙은 원안유지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7.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 등에 대해서 하위법령을 통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제2항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66조제1호의4 중 “시멘트에 관한 정보”를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 설></u>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 ----- ----- ----- ----- -----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제66조(벌칙) ----- ----- ----- -----	제66조(벌칙) ----- ----- ----- -----

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 1의3. (생 략) <신 설>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시멘트 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 -----. 1. ~ 1의3. (개정안 과 같음) 1의4. ----- -----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 보----- ----- -----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3. (생략) <u><신 설></u> 2. ~ 19. (생략)	<u>제13조의6(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제66조(벌칙) ----- -----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u> 2. ~ 19. (현행과 같음)